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14599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 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67	오세희의원	2024.8.13.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2		2207261	장철민의원	2025.1.6.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 위원회 회부
3		2207971	권칠승의원	2025.2.7.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 위원회 회부
4		2208642	오세희의원	2025.3.4.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 위원회 회부
5		2208852	김위상의원	2025.3.12.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 위원회 회부
6		2210718	이종배의원	2025.6.1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위원회 직접 회부(2025. 9. 11.)
7		2212036	박용갑의원	2025.8.7.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2025. 11. 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8		2212175	위성곤의원	2025.8.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위원회 직접 회부(2025. 9. 11.)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9		2212341	김원이의원	2025.8.2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원회 직접 회부(2025. 9. 11.)
10		2212941	이재관의원	2025.9.12.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5. 11. 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11		2214245	오세희의원	2025.11.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원회 직접 회부(2025. 11. 18.)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18.)에서 위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11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우선,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시 시정요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등의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게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도록 하며,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중고품과 예술 작품을 거래하는 지역사회, 문화, 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운영에 대한 요건을 보완하고,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나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

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제도를 도입하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부정유통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형 슈퍼마켓이나 병원 등까지 혜택을 본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매출액 기준을 도입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며, 온누리상품권 등록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재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상권 보호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전통시장 상인 등

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제6항).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다. 정부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 라.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호 신설).
- 마.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별가맹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 및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제6항, 제7항 및 제8항).
-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11항).
- 사. 개별가맹점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및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등 유통·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6조의5제1항).
- 아.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것

을 금지함(안 제26조의5제4항 신설).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년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

차. 개별가맹점이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9 신설).

카.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상품권 재판매 및 상품권 환전 요구 또는 환전을 금지하고, 등록된 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함(안 제26조의11 신설).

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등 유통·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2조 제2항 신설).

파.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및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및 판매대행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판매·회수·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

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초과한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며, 가맹점 등록 말소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제3항, 제26조의6제4항 및 제5항, 제26조의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소지자가”를 “사용자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란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 받는 자를 말한다.

15. “판매대행자”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발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안전시설물”을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항 중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설

자재를”을 “시설자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용품을”로 한다.

제2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라 설치·개량·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보조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상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이 지원·보조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 중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 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2. 소방용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여부
 3. 안전시설물의 성실시공 및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결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화재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시장의”를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로,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화재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통시장 상인”을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으로 한다.

제2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장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

제26조의4의 제목 중 “등록”을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이 신청된 점포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개별가맹점의 경우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은 개별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등록된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의 제목 중 “가맹점의”를 “가맹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거절”을 “거절(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지자를”을 “사용자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지자가”를 “사용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온라인 쇼핑몰, 행사 등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은 제외한다)

3.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4.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등 유통·사용하는 행위

3. 환전대행 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의”를 “5년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의5를”을 “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를 “제1항에”로, “1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소할 수 있다”를 “말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밖으로 이전하는”을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26조의4제5항에”를 “제26조의4제9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맹점의 소속 시장등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

5.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및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말한다)

제26조의9부터 제26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9(과징금의 부과)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나목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의10(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① 판매대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자에 관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자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재고량·회수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1(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거나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등록된 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의1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협회·단체·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록 기준 재설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2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4. 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자
제7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
하는 등 유통·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는 제
외한다)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을 “제26조의5제1항제2
호다목을”로, “온누리상품권을”을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
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
며, 같은 항에 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
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
4.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5.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
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
권의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
3.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6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가맹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발행 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 · 가스 · 화재 · 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 · 개량 · 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 4. (생 략)
② (생 략)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 · 가스 · 화재 · 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 · 개량 · 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 ⑤ (생 략)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 ·

1. (현행과 같음)

2. -----

----- 안전

시설물 -----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안전시

설물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p>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u>시설자재를</u> 사용하는 등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 ----- ----- ----- <u>- 시설자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용품을-----</u> ----- -----</p>
<p><u><신 설></u></p>	<p><u>(7)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라 설치·개량·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보조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상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이 지원·보조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⑦ (생략)</u>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p>	<p><u>(8) (현행 제7항과 같음)</u>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 ----- ----- ----- -----</p>

의 화재 · 풍수해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 · 가스 · 화재 · 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시설물

<신 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2. 소방용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여부
 3. 안전시설물의 성실시공 및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p><u><신 설></u></p> <p><u>② · ③ (생 략)</u></p> <p>제24조의2(<u>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u>) ① 정부는 <u>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u>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u>전</u></p>	<p><u>는 사항</u></p> <p><u>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결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 · 개량 · 보수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u>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p> <p><u>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p> <p>제24조의2(<u>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u>) ① -----<u>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u> -----<u>화재공제-----</u> ----- ----- ----- ----- -----. ② -----<u>전</u></p>
--	--

<p><u>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③ (생 략)</p> <p>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5. (생 략)</p> <p>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p> <p>② (생 략)</p> <p><u><신 설></u></p>	<p><u>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 ----- ----- -----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시장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매매 · 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 · 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① .</p> <p>② (현행과 같음)</p> <p><u>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이 신청된 점포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u></p>
--	---

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단서신설>

<신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 다만, 개별가맹점의 경우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은 개별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생 략)

<신 설>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온누리상품권

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등록된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
-----.

⑩ (현행 제6항과 같음)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의5(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① -----

-----.

1. -----거절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사용자를-----

2. -----

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나.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온라인 쇼핑몰, 행사 등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은 제외한다)

3.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4.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등 유통·사용하는 행위

② -----
- 사용자가 -----

-----.
-----.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생 략)

3.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환전대행 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

5년의-----

-----.

-----.

1. -----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p>② (생 략)</p> <p>③ <u>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u>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이 취소된 날부터 <u>1년</u>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p> <p>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 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 맹점의 등록을 <u>말소할 수 있다.</u></p> <p>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 역 밖으로 <u>이전하는 경우</u></p> <p><신 설></p> <p>2. <u>제26조의4제5항에</u> 따른 가맹 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p> <p>3. (생 략)</p> <p><신 설></p> <p>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u> ----- <u>5년</u> ----- -----.</p> <p>④ ----- ----- ----- ----- -----<u>말소하여야 한다.</u></p> <p>1. ----- --<u>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는</u>-- --</p> <p>2. <u>시장·군수·구청장이 가맹</u> <u>점의 소속 시장등의 인정 또</u> <u>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u></p> <p>3. <u>제26조의4제9항에</u> ----- ----- ----</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u>제26조의4제3항에</u> 따른 매출 <u>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u> <u>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u></p> <p>⑤ -----</p>
--	--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1. · 2. (생 략)

⑥ (생 략)

<신 설>

-----.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른 과세정보(「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
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및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재
무제표증명을 말한다)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9(과징금의 부과) ①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
점이 제26조의5제1항 제2호가목,
나목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
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
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신 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의10(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① 판매대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자에 관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자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재고량·회수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11(온누리상품권 사용자
의 준수사항) 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판
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서 온
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거
나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등
록된 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
누리상품권을 제시 또는 교부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
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
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
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
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
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
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
맹점, 관계 법인·단체 등의 장
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
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

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
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그 사무
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
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1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
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
맹점 등록에 관한 적정성을 주
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
우에는 등록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협회·단체·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
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u>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록 기준 재설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정한다.</u>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의2(포상금) ①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u>
<u><신 설></u>	<u>4. 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자</u>
<u>3. (생 략)</u>	<u>5. (현행 제3호와 같음)</u>
<u>② (생 략)</u>	<u>② (현행과 같음)</u>
제72조(별 칙) ① (생 략)	제72조(별 칙)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거</u>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등 유통·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제26조의 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는 제외한다)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제74조(과태료) ① -----

-----.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2.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설>

2. (생략)

<신 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4.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5.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② -----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

3.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생략)

③ (생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